

■ 법률 칼럼

종교비자(R-1)와 종교이민(I-360)

1. 종교비자

종교비자란 성직자 혹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미국의 해당 종교 기관이나 단체에서 활동하기 위해 미국 체류를 허락하는 비이민비자입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할 수 있으며, 배우자나 자녀의 합법적인 취학은 가능하나,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종교비자로 체류하실 수 있는 기간은 총 60개월입니다.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자를 승인하는 기관은 '종교적인 기관'이어야 합니다. 승인 기관이 교회이면 이 승인 기관은 종교성은 충족이 됩니다.

둘째, 교단은 비영리 세금 면제 단체이어야 합니다. 최근의 이민국은 종교 단체가 세금을 면제 받은 단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미국세청의 IRS 501 (C) (3) 편지 또는 면세기관인 교단 산하에서 그룹 면제(Group Exemption)를 받고 있다는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증거를 명확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셋째, 교단은 종교적 종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신청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종교적인 성격이어야 합니다. 즉, 비자 신청자는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거나 안수 목사님은 아니더라도 종교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교회의 고용인이어야 합니다. 안수 목사의 신분은 안수와 안수 과정에 관한 자료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안수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종교적 종사자로서 종교 비자(R-1)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향은 이민국이 안수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신청자는 실제로 그를 후원하는 승인기관의 일원(membership)이어야 합니다. 이민국은 신청자가 종교 비자를 신청하기 직전에 최소한 2년 동안 그

기관의 일원인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의 종교비자를 승인하는 교회가 성결교 교단에 속해 있다면 신청인은 성결교단에서 2년 이상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단이 다르더라도 승인 교회를 2년 이상 출석하셨다면 2년 멤버십 요건이 충족됩니다.

여섯째, 신청자는 그 직무를 위해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의 경우에는 안수를 받았고 안수에 앞서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목사님이 아닌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관련 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2. 종교이민

종교비자가 종교기관에서 종교직에 종사하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인데 반해 종교이민은 종교기관의 영주권 승인서를 받는 경우입니다. 즉 영주권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종교비자의 경우는 2년의 멤버십을 증명하면 되지만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승인서 종교기관에서 2년 이상 사역(사례)을 받고 2년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차는 승인서 교회가 I-360이라는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고 그 청원서가 승인이 난 후에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서 처리 기간이 현재 19개월 – 작년 초반에 처리 속도가 회복되어 작년 여름과 가을에는 1개월 만에 청원서가 승인된 예도 있었으나 다시 처리 기간이 길어져 19개월도 나오고 있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각종 디스크 및 협착증세 치료 최고 권위 전문의!



Dr. 윤동준

서울대학교 / UC Irvine
LA 척추신경외과
CA 척추신경보드 전문의
CA 척추신경협회 정회원
미주 척추신경협회 정회원
가든 그로브 개업 31년



디스크 협착증 증세로 고통 받는 분들이 수술 않고, 통증 없는 치료 후 기적 같다며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 모습 보며 큰 보람을 느낍니다.

목 · 허리 디스크 탈출증 / 좌골신경통 / 퇴행성 디스크 / 척추관협착증 / 만성요통

* 각종보험 및 메디케어 환경 (HMO Group : SMG, CENTER 환경)

진료과목 (각종 근육, 신경장애 및 스트레스성 통증)

- 마리 두통 / 어지럼증 / 안면마비증세
- 목 목디스크 (팔과 손기락 통증 및 마비증상 동반) / 목 통증 및 뻣뻣한 증상
- 어깨 굽거나 뻐근한 통증 / 어깨가 아파서 아파서 아파서 아파서 아파서 아파서 아파서
- 등 척추측만증 (Scoliosis) 특수교정 (특히 초등학생 때 조기 검진 중요)
- 허리 허리디스크 및 협착증 (殃치, 다리, 발바닥 및 발가락 저림, 마비증상 동반) / 퇴행성 관절염 / 요통 / 산후 허리통증
- 팔 팔꿈치 통증 / Tennis Elbow / 손목 / Carpal Tunnel Syndrome / 손, 손가락 저림증 및 무감각 증상
- 다리 좌골신경통 (다리, 발바닥, 발가락 통증, 저림 및 마비증상 동반) / 무릎통증 / 발목통증 / 편증상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및
각종 일반 사고
후유증 전문치료**



- 31년의 풍부한 임상경험
 - 흉내 낼 수 없는 풍부한 의학 지식
 - DRX 9000 (최첨단 디스크 감압치료기)
- 위에 3가지가 모두 함께 공존하며
윤동준 원장이 직접 정성으로 치료하기에,
정확한 진단과 누구도 흉내 낼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높은 성공률의 각종
디스크 치료의 "최고 권위 전문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윤동준 척추신경 병원 714.539.1717
12620 Brookhurst St. #5, Garden Grove

장례 비용은 장의사에서 주관하는 장의예식비와 공원묘지 경비로 구성된다.



공원묘지를 가지고 있는 큰 회사들은 공원묘지에 장례식장을 두기도 한다. 한인동포들이 운영하는 장의사는 장례만 인도하는 회사들이다.

예를 들어 로즈힐 공원묘지나 포리스트론 같은 기업들은 예식장을 공원묘지에 두어 한곳에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너무나 많은 다민족의 장례를 해야 하기에 한인의 문화를 이해하는 공감대가 없다. 사망일부터 하관일까지 몇 주를 기다려야 하고 하루에도 수십 건의 장례를 진행해야 하기에 예식을 단시간 내에 마쳐야 하는 큰 단점이 있다. 필자가 로즈힐 공원묘지에서 근무할 때는 한 달을 기다리는 경우도 보았다. 동포 운영의 장의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문화를 이해하기에 유족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장례를 진행시키려고 노력한다.

장례 가격을 의논하려면 장례식장에서나 혹은 상담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장례상담인은 장례가격표(General Price List)를 먼저 가족에게 제시해야 한다. 장의사는 이 순서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먼저 장례비는 기본사용료(Basic Services Of Funeral Director and Overhead), 시신 관리(Body preparation), 운구 차량(Transportation), 식장 사용비, 관과 꽃같은 물건들로 인해 발생한다. 물품은 꼭 장의사에서 구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구입 물품이 늦게 도착하거나 불량품이 도착하여도 장의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관(casket): 관은 나무관과 금속(Metal)

관으로 나누어진다.

나무관은 나무의 재질과 처리 과정으로 가격이 매겨진다. 금속관은 철관의 두께(18 gage, 20 gage)와 마무리 처리 방법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장례업체는 관을 소개하기 전에 관 가격표를 장례 가격표와 같이 구매 상담하는 가족에게 먼저 제시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겉관(Vault): 겉관은 주로 콘크리트로 만들지만 요즈음 플라스틱으로 만들기도 한다. 미국의 지역에 따라 사용 빈도가 다르다. 겉관을 꼭 사용해야 한다는 법적인 조항은 없다. 하지만 미국의 모든 묘지공원은 겉관을 요구한다. 묘지가 꺼지는 것을 방지하고 묘지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가장 기초적인(Grave Liner) 저렴한 것부터 콘크리트의 두께가 두꺼운 고가의 겉관(Vault)이 있다.

유골함(Um): 화장을 하면 유골함이 필요하다. 매장을 하면 유골함을 넣을 겉관도 필요하다.

<1485호에서 계속됩니다. >

사진=shutterstock



이효섭 장의사, 사신방부사
(FDR4701, EMB9702)

(714) 951-2520, (714) 670-6303
501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